

퍼스텝5호 신탁계약 변경
(2015.5.20 시행)

조항	구	신	비고														
제 5 조 (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) ③	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48 개월간으로 한다.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3.5.20>	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72 개월간으로 한다.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3.5.20>, <개정 2015.5.20>	대출원리금 회수업무 진행을 위한 연장														
제 20 조 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6개월간 2.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	① 좌동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6개월간 2. <삭제 2015.05.20>	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문 삭제														
제 38 조 (보수) ③	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제 17 조의 투자자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보수율과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명확히 하면 투자자산의 가액이란 2014년 5월 20일 신탁계약 변경일 현재 평택모래부두개발사업 PF 대출(차주사 : 공영해운) 원금인 100 억원을 의미하며, 제 29 조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각될 경우 그 대출 원금의 상각 후 금액에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보수율과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투자신탁보수를 산정하기로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2.45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5 <개정 2014.05.20>	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제17조의 투자자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율과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명확히 하면 제17조의 투자자산의 가액이란 2014년 5월 20일 신탁계약 변경일 현재 평택모래부두개발사업 PF대출(차주사 : 공영해운) 원금인 100억원을 의미하며, 제29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각될 경우 그 대출 원금의 상각 후 금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율과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투자신탁보수를 산정하기로 한다.	보수인하 -> 수익자동의 요하지 않음.		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수구분</th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수율 적용기준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4.5.20 개정일부 터 2015.5.19 까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5.5.20 개정일부 터 신탁계약 종료일 까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 집합투자 업자보수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 1,000 분의 2.45</td> <td row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1 호~4 호 각각 연 1,000 분의 0.1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 판매회사 보수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 1,000 분의 0.2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. 신탁업자 보수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 1,000 분의 0.2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. 일반사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 1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보수구분	보수율 적용기준		2014.5.20 개정일부 터 2015.5.19 까지	2015.5.20 개정일부 터 신탁계약 종료일 까지	1. 집합투자 업자보수율	연 1,000 분의 2.45	1 호~4 호 각각 연 1,000 분의 0.1	2. 판매회사 보수율	연 1,000 분의 0.2	3. 신탁업자 보수율	연 1,000 분의 0.2	4. 일반사무	연 1,000	
보수구분	보수율 적용기준																
	2014.5.20 개정일부 터 2015.5.19 까지	2015.5.20 개정일부 터 신탁계약 종료일 까지															
1. 집합투자 업자보수율	연 1,000 분의 2.45	1 호~4 호 각각 연 1,000 분의 0.1															
2. 판매회사 보수율	연 1,000 분의 0.2																
3. 신탁업자 보수율	연 1,000 분의 0.2																
4. 일반사무	연 1,000																

		관리회사보 수율	분의 0.15		
		<개정 2014.05.20>, <개정 2015.05.20>			